#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성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432 발의연월일: 2024. 11. 11.

발 의 자:이성권・이헌승・조은희

박정훈 • 조승환 • 주진우

신성범 · 최은석 · 안상훈

정연욱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소방공무원의 직업 특성상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률이 높아 건강 관리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. 현행법은 직업성질환의 진단, 발생원 인 규명 등을 위하여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소방 활동 현장의 유해요인 간 상관관계에 관한 직업성질환역학조사를 실 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.

그런데, 직업성 유해물질에 소방공무원이 노출되어 질병 발생에 관한 역학조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의료정보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청장이 현행법상 특수· 정밀건강진단 결과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 요양급여기록 및 건강검진 결과, 「암관리법」상 암 검진 사업, 암 등록통계 사업 등에 관한 자료 등을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더불어 역학조사에 필요 한 정보의 종류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기 어려운 요청 가능 정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서 추가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17조제3항 신설).

#### 법률 제 호

##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7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- 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1.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진단 결과
- 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기록(역학조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) 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 결 과
- 3. 「암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 암검진사업, 제14조에 따른 암등록 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른 암정보 사업에 관한 자료
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17조(역학조사)	1.2	(생	제17조(역학조사) ①・② (현행과
략)			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		③ 소방청장은 역학조사를 위
			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
			정보 또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
			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
			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
			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
			면 이에 따라야 한다.
			<u>1.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</u>
			른 특수건강진단 및 정밀건강
			<u>진단 결과</u>
			2.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
			에 따른 요양급여기록(역학조
			사 관련 질병으로 한정한다)
			및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
			른 건강검진 결과
			<u>3. 「암관리법」 제11조에 따른</u>
			암검진사업, 제14조에 따른 암
			등록통계사업 및 제15조에 따
			른 암정보 사업에 관한 자료
			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
			는 역학조사에 필요한 정보

	또는 자료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